

의안번호	제 21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곤충종자보급센터 → 곤충종자산업연구소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행정부지사 → 경제부지사 (대학관련 업무이관)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산업과장
-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
  - 원예유통식품과장 → 농식품유통과장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 공보관 → 대변인
  - 보건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업무이관)
  - 관광항공과 → 관광과
  - 관광항공과 → 균형발전과 (항공관련 업무이관)
  - 유기농산과 → 스마트농산과
  - 수질관리과 → 수자원관리과
  - 교통정책과 → 교통철도과
  - 총무과 → 행정운영과
  - 민간협력공동체과 → 도민소통과

-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안 제6조)
  - 행정국장 → 기획관리실장 (일반조정교부금 업무이관)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관광진흥과장 → 관광과장
-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 기획관리실장 → 행정국장 (광역행정 업무이관)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
  - 바이오환경국장 → 환경산림국장
-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 행정부지사 → 경제부지사 (대학관련 업무이관)
  - 기획관리실장 → 과학인재국장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곤충종자보급연구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센터””를 “곤충종자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각각 “연구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센터의 지원)”을 “(연구소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연구소”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식

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원예유통식품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별표 2의 7. 문화체육관광부란 중 “관광항공과”를 “관광과”로 하고, 같은 표의 8. 농림축산식품부란 중 “유기농산과”를 “스마트농산과”로 하며, 같은 표의 10. 보건복지부란의 가. 감염병 재난란 중 “보건정책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11. 환경부란 중 “수질관리과”를 각각 “수자원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의 13. 국토교통부란 중 “교통정책과”를 각각 “교통철도과”로, “수질관리과”를 “수자원관리과”로, “관광항공과”를 각각 “균형발전과”로 하고, 같은 표의 14. 해양수산부란 중 “수질관리과”를 각각 “수자원관리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1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유기농산과”를 “스마트농산과”로, “관광항공과, 수질관리과”를 “관광과, 수자원관리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를 “교통철도과, 관광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민간협력공동체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2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총무과”를 “행정운영과”로, “유기농산과”를 “스마트농산과”로, “관광항공과, 수질관리과”를 “관광과, 수자원관리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를 “교통철도과, 관광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과”로, “민간협력공동체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3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총무과”를 “행정운영과”로, “유기농산과”를 “스마트농산과”로, “관광항공과, 수질관리과”를 “관광과, 수자원관리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를 “교통철도과, 관광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민간협력공동체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별표 5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총무과”를 “행정운영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교통정책과, 관광항공과”를 “교통철도과, 균형발전과”로, “민간협력공동체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별표 6의 ① 상황관리 총괄반란 중 “총무과”를 “행정운영과”로 하고, 같은 표의 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 중 “유기농산과”를 “스마트농산과”로, “관광항공과”를 “관광과”로, “수질관리과”를 “수자원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의 ⑦ 재난수습 홍보반란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⑨ 교통대책반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철도과”로, “관광항공과”를 “균형발전과”로 하며, 같은 표의 ⑪ 자원봉사 지원 관리반란 중 “민간협력공동체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행정국장이,”를 “일반조정교부금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제10조(「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기능)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u>곤충종자보급센터</u>(이하 “<u>센터</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u>센터</u>는 곤충종자보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u>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제11조(곤충종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기능) ① ----- ----- ----- <u>곤충종자산업연구소</u> (이하 “<u>연구소</u>”----- -----.</p> <p>② <u>연구소</u>----- ----- -----.</p> <p>③ <u>연구소</u>-----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센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u>센터</u>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센터</u>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2조(<u>연구소</u>의 지원) ① ----- ----- <u>연구소</u>----- -----.</p> <p>② <u>연구소</u>----- ----- -----.</p>



##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제부지사</u> ----- ----- -----  ③ (현행과 같음)

## 3.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u>문화예술과장</u> 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생 략)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문화예술산업과장</u> -----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u>문화예술과장</u> 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생 략)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문화예술산업과장</u> ----- ----- -----  ③ (현행과 같음)

#### 4.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u>원예유통 식품과장</u>이 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농식품유통과장</u>-----.</p>

####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p> <p>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u>공보관</u></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 <u>대변인</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6.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 ③ (생략)</p>	<p>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일반조정교부금은 행정국장이</u>,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한다.</p>	<p>④ -----          -- <u>일반조정교부금과</u> -----          -----          -----.</p>
--	---

**7.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u>관광진흥과장</u>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관광과장</u> -----          -----          -----          --.</p>

**8.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u>기획관리실장</u>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④ (생략)</p>	<p>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행정국장</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p>



## 관련 법령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1.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2.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13.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견,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12.31.>
17.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곤충종자산업연구소**, 포도다래연구소, 마늘양파연구소, 수박딸기연구소, 대추호두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

제9조(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① 과학인재국에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육성과, **청년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청년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공감정책 또는 그 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
2.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관리
3.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청년의 사회·문화 등 참여 확대
7. 청년희망센터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
8.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9. 대학 연계 청년정책 사업 개발 및 행사 지원
10.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청년·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12. 청년 취업·창업 지원 총괄
13.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육성
1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15. 대학·기업 등 취업·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16. 청년 직업능력개발 추진

17. 청년창업 기반조성 지원
18.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9. 청년창업자 재도전 지원
20.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21. 교육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2. 초·중·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5.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2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 과학기술기반 R&D과제 발굴 및 지원
28. 다부처(집단)연구사업
29.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30.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1. 시험평가·인증·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32. 과학기술진흥 업무
33. 지방과학기술인 육성
34.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사업
35. 과학관등록 및 등록 변경

제10조의2(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 ⑥ (생략)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업무



5. 신종감염병에 관한 업무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7. 방역대책 및 비축약품에 관한 업무
8.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업무
9.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10.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11.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4호)
12.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및 건축문화과를 둔다.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제13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제14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① 균형건설국에 균형발전과, 도로과, 교통철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
5. 내륙권 계획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사업 추진
7. 행복마을사업
8.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15.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
16.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18.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9. 개발제한구역관리
20.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1.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22.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관리
24. 온천관리
25. 도계조형물 관리
2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32. 삭제 <2022.12.30.>
3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지도·관리
34.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
35.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
36. 밀레니엄타운 조성 지원

37. 공항활성화 추진 및 항공산업 지원

3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운영과, 도민소통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인사혁신과를 둔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